



- 2024년 공무원(조리사) 채용 -
최종 합격자 공고

경기도 여주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(조리사)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
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9일

경기도 여주소방서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응시분야	응시번호	성명(핸드폰 뒷번호)
공무원(조리사)	2024-02	신 ○ 자(48342)

※ 예비합격자 : 2022-03 김 ○ 철(7072)

2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가. 최종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여주소방서로 방문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 시 : 2024. 2. 6.(화) 14:00
- 장 소 : 여주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사무실
- 제출서류
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
 - 결격사유확인서 1부 [붙임1 서식]
 - 통장 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 - 반명함판 사진 1매

3. 기타사항 안내

가.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
-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결격사유 확인 시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행정과(031-887-7213)로 연락 바랍니다.

4.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결격사유 확인서 1부
2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

[붙임 1]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여주소방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. 2. .

확인자: (인)

여주소방서장 귀하

[붙임 2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응시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여주소방서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